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3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5. 25.
4. 회부일자 : 2021. 5. 31.

## II .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III . 주요내용

### 가. 특정성별영향평가(안 제2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방법
- 특정성별영향평가 긴급 실시의 경우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반영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 위원회 심의·조정 내용

####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 6명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마.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대리, 위원장의 회의소집
-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안전 관련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바. 간사(안 제7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함

#### 사. 운영세칙 등(안 제8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IV. 참고사항

1. 관련법규 : 「성별영향평가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안 [별첨 1]).
3. 협의 : 해당기관 없음.
4. 기타
  - 입법예고(2021. 4. 16. ~ 5. 6.)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조례안 [별첨 2])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조례안 [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조례안 [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 (조례안 [별첨 5])
  - 관계법규 : (조례안 [별첨 6])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31호로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성별영향평가’란 법령·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sup>1)</sup>
-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도를 기준으로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29,395건의 법령·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중 약 11%인 3,373건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sup>2)</sup>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법령·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구분	'13 법령	'14		'15 법령	'16 법령	'17 법령	'18 법령	'19 법령	'20 법령	비고
		법령	사업							
건 수	18	8	20	24	19	16	24	24	36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교육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바, 입법취지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1)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2)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여성가족부, 2020.8.)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서<sup>3)</sup>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sup>4)</sup> 위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특히 안 제2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긴급 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급할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

3)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않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sup>5)</sup>

안 제2조제3항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법령·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는바, 안 제2조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기타 의견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면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본조신설 2016. 12. 20.),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조신설 2015. 2. 3.).
- 다만 동 조례의 제정 시기와 관련하여 이미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상위법의 개정이 2015년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상위법령의 제·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표-2] 각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 7. 5.
2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 3. 13.
3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1. 4. 5.
4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6. 2. 15.
5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 12. 29.
6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 7. 19.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 9. 29.
8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 12. 26.
9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8. 1. 2.
10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 12. 21.
11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 8. 11.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8. 10. 11.
13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 7. 31.
14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 12. 29.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입법예고 기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해 ‘남녀 갈등 조장, 페미니즘 사상 주입, 성소수자 인권 관련’의 이유로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조례안 [별첨2]), 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규정을 근거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청이 조례개정에 있어 상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은 법적 통일성 측면에서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오늘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성”에 대한 견해는 교육정책 방향은 물론 최근 차별금지법 논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교육계 내에서라도 먼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5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8. 3.27.>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8. 3. 27.]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